

소년법원은 사실상의 부모라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소년법원만이 사실상의 부모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판례법과 규칙 제 5.502(10) 조를 적용합니다. 판사는 보호자가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보호와 그 기간을 고려합니다. 또한, 판사는 미성년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법원에 알려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보호자가 미성년자에게 해를 입혔거나 미성년자를 위험에 처하게 한 적이 있으면 사실상의 부모가 아니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판사가 보호자가 사실상의 부모가 아니라고 판결하더라도, 보호자는 여전히 JV-290, 보호자 정보 양식을 제출하여 미성년자에 관해 느끼는 것과 알고 있는 사실을 판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부모 팜플렛

여러분은 소년법원의 피보호자로 선고된 미성년자를 지금까지 돌보아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미성년자의 법원 케이스에 더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고 사실상의(de facto)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이 팜플렛은 다음 사항에 관해 설명합니다:

- 소년법원이 인정한 사실상의 부모의 권리
- 사실상의 부모에 대한 정의
- 소년법원에 사실상의 부모 신분을 신청하는 방법
- 소년법원이 사실상의 부모라는 것을 결정하는 방법.

추가 정보를 원하거나 특정한 질문이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변호사 협회에 전화하여 소개를 받으십시오.

사실상의 부모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소년법원이 사실상의 부모라는 것을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피보호자에 대한 심리에 출석할 권리(주: 보호자 (caregiver)는 사실상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피보호자에 대한 모든 사후 심사 심리 및 영구 심리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을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에게 반대 심문을 할 권리, 그리고
- 처분 심리 및 그 이후의 심리에 당사자로 참여할 권리.

캘리포니아 주 법원 규칙 제5.534(a), 5. 502(10)조(캘리포니아 주 법원 웹사이트 참조: www.courts.ca.gov)를 읽으면 이러한 권리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의: 사실상의 부모는 부모와 같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부모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없습니다:

- 재결합 서비스
- 변호사 수수료(그러나, 판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심리(판사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심리를 요청할 수는 없으나, 항소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의 부모”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실상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소년법원의 피보호자인 경우.
- 미성년자를 지금까지 매일 돌보아온 경우.
- 미성년자의 부모 역할을 해온 경우.
- 미성년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는(또는 제공해온) 경우. 또는 미성년자에게 보호와 사랑을 제공해온 경우.

“사실상의 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판사는 다른 법원의 판례와 캘리포니아 주 법원 규칙 제5.502(10)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판결을 합니다. 이 규칙은 다음의 캘리포니아 주 법원 웹사이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www.courts.ca.gov

어떻게 사실상의 부모 신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의 부모 신분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양식들을 작성하십시오: JV-295 및 JV-296.

JV-295 양식은 보호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요구합니다. 보호자는 이 양식을 통해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미성년자의 사실상의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고 판사에게 신청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양식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변호사도 이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JV-296 양식에서는, 판사가 JV-295에 이름이 기재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사실상의 부모라고 판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미성년자를 위해서 한 중요한 일들과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기재하십시오. 이것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미성년자를 돌본 기간;
- 미성년자와 함께 하는 일;
- 미성년자를 위해 하는 일;
- 미성년자를 돌보는 정도;
- 미성년자의 특별한 필요, 포부, 희망에 관해 알고있는 것;
- 미성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방법.

또한, 보호자와 미성년자를 잘 아는 다른 사람의 편지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예를 들면, 교사, 요법사, 소아과 의사, 영적 조연자 등이 있습니다.